

<b>제2026-9호</b> <b>2026년 2월 3일(화)</b>	<b>시 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14호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사전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35호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40호 제6기 여수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4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동북아 LNG Hub 터미널 송출주배관 건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351호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68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여수시 공고 제2026-372호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76호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86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9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동북아 LNG Hub 터미널 송출주배관 건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395호 전기사업 양수양도 공고 - JS에너지, 에이치와이솔라 태양광발전소, 장망고 태양광발전소

**읍·면·동**

- 여수시 소라면 제2026-1호 계속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 장 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제2026-4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b>회 람</b>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사전모집 공고

여수시는 정원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 발굴을 위하여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공모」를 추진하오니 역량 있는 정원 작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1. 30.

### 여 수 시 장

#### 1.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 행사기간: 2026. 9. 5. ~ 11. 4. [약 60일간]  
\*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과 연계(일정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행사장소: 여수시 일원
- 행사주제: (가칭) “정원, 섬과 미래를 잇다.”
- 주최/주관: 전라남도/여수시

#### 2. 공모개요

- 공모명: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공모
- 공모주제: (가칭) “정원, 섬과 미래를 잇다.”

- 시민의 일상과 섬, 지역 문화가 녹아든 남도정원
-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섬·해양 정체성을 담고,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창의적 정원 연출

○ 공고기간: 2026. 1. 30.(금) ~ 4. 17.(금)

○ 접수기간: 2026. 4. 13.(월) ~ 4. 17.(금) 17:00까지

○ 조성장소: 여수시 일원

※ 본 공모는 행사 기획 방향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사전 작가 모집이며, 최종 조성 장소 및 세부 공간 조건은 향후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정원유형: 작가정원 (조성장소에 행사 후에도 존치)

○ 모집규모: 작가정원 8개소

### 3. 참가자격

- 관련 분야 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는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당선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
  - 정원 조성기간 중 시공 현장에 상주 가능한 자
  - 페스티벌 기간 중 정원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

### 4. 제출양식

#### ○ 일반사항

- 도면에는 방위, 축척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 응모서류 및 출품내용은 제출한 후 내용을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컬러, 3D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 내용과 관련 없이 작성자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 특정 업체 상호명, 단체의 명칭, 상징적인 표시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한다.

○ 제출서류

- ① 출품 신청서 (서식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③ 작품도면 (평면도, 조감도, 작품설명-디자인컨셉, 식재리스트 각 1부)
  - ※ 필요시 부분상세도 등 추가가능
  - 제출크기 : A3 Size (420mm\*297mm 가로형태로 구성)
- ④ 작품설명서(A4, 가로/세로 무관) 1부 - 총 10매 이내(표지와 목차 제외)
  - 표지(서식 3), 목차
  - 3차원 이미지(필요시)
  - 정원 디자인 개요 및 개념 설명
  - 배치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주요 도면
  - 식재 리스트
  - 식재 계획안(공사 일정 포함)
  - 조성비 산출내역(설계/식재/시설물/포장/기타로 구분)
- ⑤ 참가자 포트폴리오 1부 - 자유형식, A4(가로/세로 무관) 5매 이내
- ⑥ 서약서 1부 (서식4)

5. 조성규모 및 지원사항

모집분야	조성면적	조성지원금	비고
작가정원	개소당 150㎡ 내외 *행사 이후 존치정원	8천만원(부가세포함)	8개소

※ 면적 및 조성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시민 참여정원(30㎡) 추후 별도 모집예정임.

## 6.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lch1008@korea.kr)
- 접수일자: 2026. 4. 13.(월) 10:00 ~ 4. 17.(금) 17:00

## 7. 지원작품 심사 및 선정

- 심사는 주최측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작품(선정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응모자는 당선작 선정 이전에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심사관련 사항은 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심사 내용 및 방향
  - ① 심사의 목표 및 기준
    - 심사의 목표는 공모 목적과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최상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데 있다.
    - 심사 기준은 공모 심사위원단이 최종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 사항은 심사위원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실격 처리
    - 응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작성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분명한 허위 기재(표기)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특정해 기록하거나 암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한 정원디자인 공모 출품 작품을 모방한 경우(표절 등)
    - 참가 자격, 익명성 유지 등 공모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봄 공모요강을 위반한 경우

- ③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 도면과 작품설명 및 신청서를 참조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구상안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별 합계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1 지원작품 선정  
- 분야별 선정작품 외 예비작품 2작품 선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100)
주제연관성	- 주제와 작품 간의 관련성, 스토리텔링의 적절성	20
창의성	- 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공간구성 등 독창성과 탁월한 아이디어 - 기성품이 아닌 작가의 창작 작품으로서 가치	20
예술성	- 정원디자인의 예술성 -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식재 및 시설물 활용 및 계획	20
실용성	- 조성 및 관리가 용이하고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디자인 - 오염, 파손 등에 강하고 조성 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	20
실현가능성	-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시공에 대한 이해도 - 예산과 시간이 고려된 실현 가능성	20

※ 세부 심사 일정 및 계획,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 선정결과 발표 : 2026. 5. 6.(수)

\*여수시 홈페이지, 선정 당사자에 한해 개별 유선연락

8. 공모 일정

- 공고기간: 2026. 1. 30.(금) ~ 4. 17.(금)
- 작품접수: 2026. 4. 13.(월) ~ 4. 17.(금) 17:00까지
- 1차 서류심사: 2026. 4. 23.(목) ※ 작가정원 16팀(2배수) 선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 4. 28.(화) 홈페이지 공고
- 2차 발표심사: 2026. 5. 4.(월) ※ 최종 8팀 선정  
- 선정 발표: 2026. 5. 6.(수) 홈페이지 공고

- 사전설명회: 2026. 5. 8.(금)
- 작품행사기간: 2026. 9. 5. ~ 11. 4. [약 60일간]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 참가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모는 장소 확정 이전 단계의 사전 작가 모집으로, 대상지 확정 후 제공되는 부지 조건에 따라 작품 설계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상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작 선정을 무효처리하고 지원금은 회수함.
- 페스티벌 참여 관련 모든 공지는 기재된 연락처에 문자로 발송하며 신청 시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임.
-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표절 등), 기존 조성작품,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원작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 및 시상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함. 이로 인한 업무방해 및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도입시설은 제작 및 현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향후 유지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해야 함.
- 모든 작품은 주어진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되 정치적, 종교적 표현이나 특정국가, 인물, 사건을 표현하는 연출은 금지됨.
- 지원작품으로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설명회, 개막식에 참석하여야 함.
- 모든 작품은 향후 운영사와 지역 시민들에 의해서 관리되며, 이 경우 부분적인 식재변경이나 시설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가자는 이에 동의함.

- 응모작품의 저작권은 참여작가에게 있음. 다만 참여작가는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의 참여작품 사진, 참여작가 프로필, 도면, 작품설명 등의 포괄적인 사후 활용과 이 경우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동의함.
- 조성지원금은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행사 진행과 관련된 모든 공지 및 계약체결, 지원금 지급 등은 신청서상 기재된 대표 1인과 진행되며, 팀원들에게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 참가자는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10. 대상지 (별도안내)

## 11. 문의처

- 여수시 산림과(전남 여수시 시전동 109, 산림과) 산림휴양정원팀
  - 연락처 : 061-659-4609 / 이메일 lch1008@korea.kr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공모」 참가팀의 선정 및 데이터화 등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일반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 나. 사회정보 - 경력사항, 자격 등
- 다. 통신정보 - 전자우편, 휴대연락처 등
- 라. 기타정보 - 참가자 소개서 및 작품설명서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본 시의 문서보존기간에 의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심사  
번호

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음

#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참여작가 공모 작품설명서

---

작 품 명

---

2026. . . .



# 「2026년 빈집정비사업 등 경관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 및 주택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여 수 시 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국토부, 농식품부 지원)

나. 사업규모 : 44동

1) 도시지역(국토교통부) : 36동

2)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 8동

다. 사업대상 :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공동주택 등은 제외)

라. 사업내용 : 빈집 철거 및 부지 조성

마. 사업조건 : 토지를 3년 동안 공공용지(꽃밭, 주차장 등) 활용하는데 동의

바. 사업주체 : 여수시 직접 시행

##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

나.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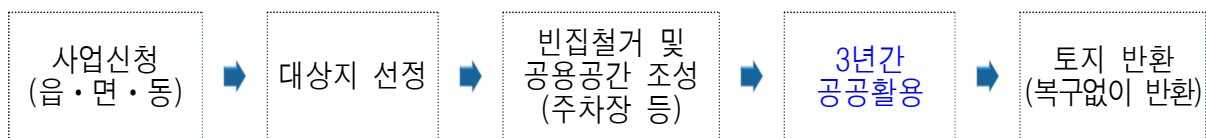
- (첨부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첨부 2) 공공활용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 1부.

### 3. 선정기준:

- 가. 2024년 빈집실태조사 3등급이면서 부지 활용 가능한 빈집
- 나. 도심지 및 대로변 등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빈집
- 다. 악취, 오염 등 및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저해되는 경우 등
-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업 진행 절차



### 5. 주의사항

- 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이 다수일 경우 동의서(위임장)을 통해 모두 동의가 된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신청 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행정팀(061-659-4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서식1]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 사업 신청 사진대장 1부.
  3. [서식3] 공동활용 동의서(토지사용 승낙서) 1부.
  4. [서식4] 빈집정비 사업 협약서 1부.
  5. [별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별지2] 위임장 1부.
  7. [별지3] 상속권자 동의서 1부.

# 서식 1

#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026년도 [ ] 도시(동)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 농어촌(읍·면)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
신 청 인	신청자격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성 명		생년월일	
	주소(실거주)			
	연락처(H.P)			
대상 빈집 현황	건물위치			
	건축연도		건물규모(m <sup>2</sup> /층)	
	건물구조		슬레이트지붕	유 □ / 무 □
	부속 건축물	유 □( 호) / 무 □	건축물대장	유 □ / 무 □

## I. 빈집 철거 관련 동의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 정리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처리 목적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처리 항목	빈집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유의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기, 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1부.	<input type="checkbox"/>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3. 공공활용 동의서(토지사용 승낙서) 1부.	<input type="checkbox"/>
추가서류 (필요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 사업 신청 사진대장

사업명	2026년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신청인	주소 :	성명 :
사업위치	빈집 위치 :	
위치도		
건물 전경		
건물 내부		

공공활용 동의서(토지사용 승낙서)

□ 사업명 :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 사업내용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공공활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년)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 바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위 기간 동안 공공목적(공용텃밭, 주민쉼터 등)으로 사용에 동의하며, 활용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없이 환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승낙은 승계되며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시 철거비용을 환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유자① (서명 또는 인)

소유자② (서명 또는 인)

소유자③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빈집정비 사업 확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빈집 소재지	

본인 ( )은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여수시
이용사무(이용목적)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관련 빈집 소유자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2026.2.3.(화) ~ 사업완료시 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 주민등록번호( ) [ ] 여권번호( )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여수시장 귀하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상속권자 동의서

※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주(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위임하는 사람' 작성란 추가 등 가능)

철거대상 빈집 주소지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상속순위자)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철거 대상지(빈집)의 상속정리가 되지 않아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 - 340호

## 제6기 여수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여수시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및 연도별 감차규모 등을 결정하는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명단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 29. ~ 2. 12.(15일간)
2. 위원구성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3. 위원임기 : 2026. 1. 29. ~ 2028. 1. 28.(2년)
4. 기 능
  - 감차보상금의 수준 및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결정
  -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결정
  - 감차사업 시행기간 결정
  - 감차 후 사후관리 방안
5. 위원명단 : 붙임 참조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659-412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제6기 여수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 위(직 업)	비 고
계		9명		
1	위원장	임병중 (남)	교통과장	당 연 직
2	위 원	최상섭 (남)	교통행정팀장	"
3	위 원	박용건 (남)	여수법인택시협의회 총무	위촉직
4	위 원	최기성 (남)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여수시지부장	"
5	위 원	장문기 (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남여수지역 지부장	"
6	위 원	강재현 (남)	여수시의회 의원	"
7	위 원	김상구 (남)	전남대학교 교수 (물류교통학 전공)	"
8	위 원	유춘진 (여)	여수YWCA 사무총장	"
9	위 원	김대희 (남)	여수YMCA 사무총장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송출주배관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여수시장

## 1. 관련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 분야
1	대한건설기술단 주식회사	김보현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17	토 목
2	주식회사 서림	박주원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31	토 목
3	에스알기술 주식회사	김영미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8-9, 3층	토 목
4	(주)신라이앤씨	신진화	전라남도 광양시 삼봉산로 21, 204호	토 목
5	(주)정진이앤씨	정찬욱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2, 3층	토 목
6	메타구조안전원 주식회사	서동진 염환석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70, 4층	토 목
7	(주)에세스엔지니어링	김원중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49-1, 1층	토 목
8	유성건설(주)	김범중 문병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송달로 63-2	토 목

#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물관리법」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위반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 29.

##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건축물관리법」제11조, 「건축물관리법」제13조, 「건축물관리법」제5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5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주)여수 온천리조트	봉계동 11-5번지	건축물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여수시 여문2로 90, 205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1. 29. ~ 2026. 2. 13.(15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3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4명
2. 공고기간: 2026. 1. 30. ~ 2026. 2.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읍촌면 게시관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6. 1. 30.

여 수 시 장

공시송달 조서 (울촌 가장지구)

순번	성명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지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길 151-4	2026-01-20	패문부재(반송)
2	지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 (심곡동)	2026-01-20	패문부재(반송)
3	지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5길 4-9, 301호 (신대리)	2026-01-20	패문부재(반송)
4	정정*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8 (조화리)	2026-01-20	패문부재(반송)

##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30.

### 여 수 시 장

####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2026. 2. 4.(수) 10:00 ~ 12. 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보조금 지급 신청 후 2026. 12. 15.까지 원본서류 제출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사업량: 수소전기자동차 114대**

- (승용) 100대(우선 지원\* 10대, 일반 90대)

- (버스) 14대(저상 4대, 고상 10대)

\* 2026. 9. 30.까지 지원가능 확인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우선지원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다자녀,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 택시, 노후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지원 차종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 주행거리(km)	연료소비효율 (km/kg)	
승용	현대자동차(주)	디올뉴넥소	636	99.5	
버스	저상	현대자동차(주)	일렉시티 FCEV	751.2	21.9
	고상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FCEV	963.8	28.1
	고상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FCEV(2026)	960.4	28.0

- 지원대수: 개인 1대, 기업·법인·단체 당 1대
- 지원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 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대당 보조금 지원금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승 용	35,000	22,500	5,000	7,500	정액지원
저상버스	337,000	210,000	27,000	100,000	
고상버스	370,000	260,000	33,000	77,000	

\* 사업 추진 중 국비보조금 확정액이 변경될 시 지원금액 변경 가능

##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대상

- 구매신청일 접수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수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개인
- 여수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법인·단체 및 기업
- 여수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 기타사항

#### - 수소전기승용차

· 개인: 1인당 1대

-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검토 적용
-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여수시인 경우 가능  
개인택시 및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인) 여수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공동명의) 공동명의자도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여수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지원가능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족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법인 · 기업체 · 단체 · 공공기관 등: 1대

\* 단,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에 가입한 민간기업,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임차한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량수요가 있는 경우 최대 2대 지원(대량 수요가 있는  
법인은 단, 공고 1개월 후 잔여물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 수소전기버스(저상, 고상)

· 법인: 1대 \* 사전 협의한 업체 우선, 잔여물량 협의 후 선정

· 지원자격: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여수시에 차고지가 소재할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대량수요가 있는 법인은 최대 2대 지원, 단, 공고 1개월 후 잔여  
물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가능

○ 우선지원: 상기 신청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우선순위	상세설명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상아·독립유공자
다자녀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생애최초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택시,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시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확인 후 신청

###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리스렌트용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 ○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여수시로 한정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부여를 취소

##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2026. 2. 4.(수) 10:00 ~ 12. 4.(금) 18:00 \* 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방법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수

## ○ 자격 부여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제작·수입사로 문자 통보]

※ 자격 부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이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지원 자격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로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자격부여 할 수 있으며,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 지원가능 확인 요청은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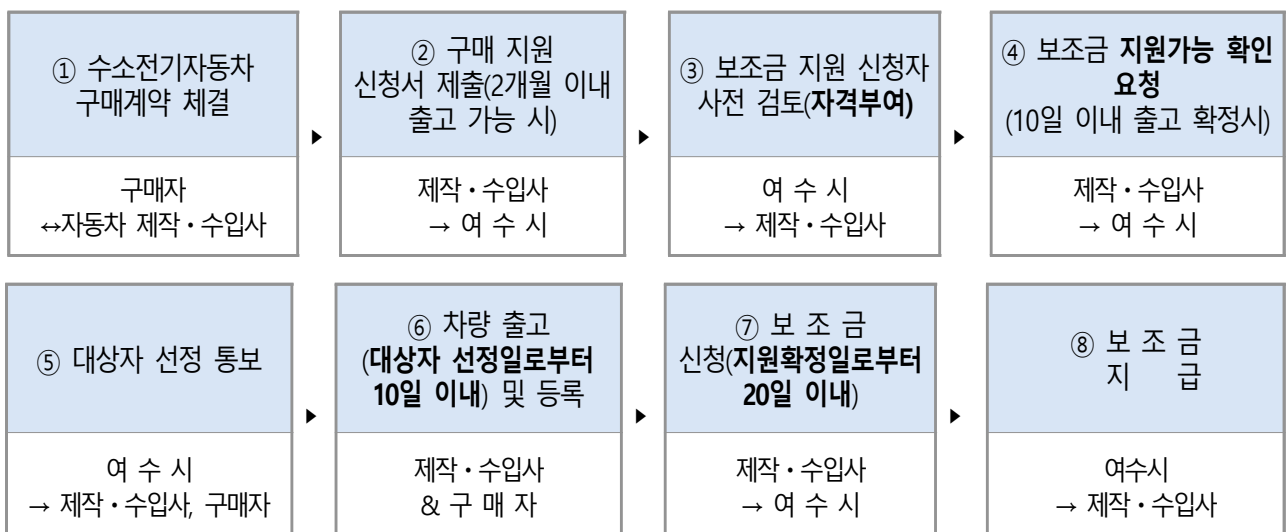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전산자료 캡처 등)를 제출 시에만 인정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대상자와 제작·수입사로 문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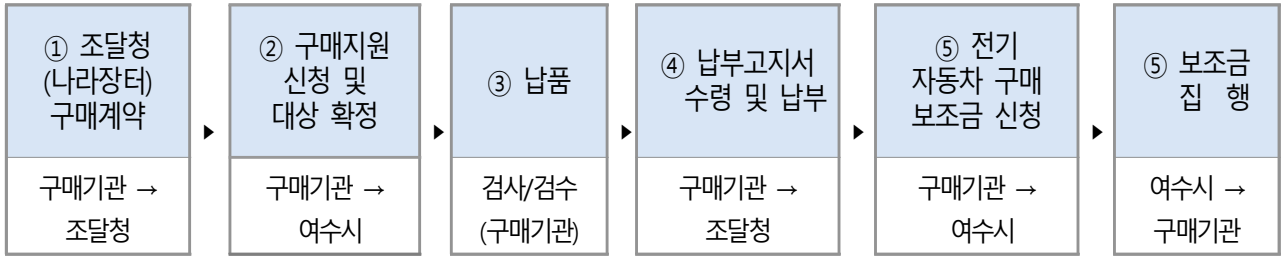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상관없음)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가능하며, 「우선지원」 물량은 9. 30.까지 접수

##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여수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30일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차량구매계약서 제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개인		법인 · 기관	
공통	① 구매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② <b>본인서명사실확인서</b> (신청서 서명과 일치여부 확인) ③ <b>차량 구매계약서</b> (출고예정일 및 계약번호 필수 기재) ④ <b>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b> ⑤ <b>주민등록초본</b> (주민번호뒷자리, 주소변동사항(1년) 포함)	공통	① 구매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② <b>인감증명서</b> (신청서 날인과 일치여부 확인) ③ <b>차량 구매계약서</b> (출고예정일 및 계약번호 필수 기재) ④ <b>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b> ⑤ <b>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b>
추가	우선순위 추가지원	해당 증빙서류	
	공동명의	▶ 같은 세대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세대가 다른 경우 - 공동명의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개인사업자	<b>사업자등록증명원</b>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증빙서류

우선순위	신청 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li> <li>▶ 기초생활수급자</li> <li>▶ 차상위계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li> <li>▶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li> <li>▶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유공자</li> <li>▶ 독립유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li> <li>▶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2명이상 양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자동차세, 취득세/ 만18세부터 현재까지) -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 택시면허증</li> <li>▶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확인서</li> <li>- 보조금 지급청구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말소일자 2026. 1. 1.이후)</li> </ul> </li> </ul>

## 4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여수시는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

○ 지급신청 제출서류

-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작·수입사)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등록된 모든 원본 서류 여수시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 5

## 유의사항

- 공고문의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포함)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를 취소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이 취소됩니다.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차량 사용본거지가 관외로 등록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은 여수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부당지원 예방) 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지인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만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해야 함  
대표 소유주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함

-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구매지원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충전 관련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보조금 환수 조치 등) 받을 수 있습니다.

## 6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이행기간 중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이행기간내 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수기준[수출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회수기준[그밖의 경우]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제출 후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의무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그 밖의 경우

수소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릅니다.

## 7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여수시 기후생태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원본 서류 제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www.ev.or.kr 1661-0970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898
여수시 (기후생태과)	여수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1899-2012 (여수시 민원콜센터)

- 붙임 1. 수소충전소 현황(전남, 광주) 1부.  
 2.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사 현황(여수) 1부.  
 3. [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4.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별지 제3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6. [별지 제4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7. [별지 제5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8. [별지 제6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1부. 끝.

[붙임 1]

## 수소충전소 현황(전남, 광주)

순번	지자체	충전소명	주 소
1	여수시	하이넷 여수SPG 수소충전소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603(중흥동)
2	여수시	하이넷 여수둔덕 수소충전소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17(둔덕동)
3	여수시	코하이젠 여수주삼 수소충전소	전남 여수시 주삼동 1029-4
4	순천시	순천액화수소충전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428(가곡동)
5	광양시	하이넷 광양 성황수소충전소	전남 광양시 백운로 955-4
6	광양시	효성 광양초남 액화수소충전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1길 77-8
7	목포시	목포 유정 수소충전소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21
8	장성군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수소충전소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 108
9	장흥군	하이넷 장흥정남진휴게소 수소충전소	장흥군 부산면 남해고속도로 41
10	함평군	하이넷 함평 지휴게소 수소충전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해안고속도로 31-1
11	고흥군	고흥군 수소충전소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265-1
12	광주광역시	동곡 수소충전소	광주 광산구 동곡로 326(복룡동)
13	광주광역시	E1 광주 오렌지 수소충전소	광주 광산구 신촌동 682-5
14	광주광역시	진곡 수소충전소	광주 광산구 오선동 573
15	광주광역시	장등 수소 버스전용 충전소	광주 북구 장등동 858-3
16	광주광역시	임암 수소충전소	광주 남구 임암동 675
17	광주광역시	월출 수소충전소	광주 북구 월출동 987
18	광주광역시	벽진 수소충전소	광주 서구 벽진동 628-1
19	광주광역시	하이넷 광주 매월 수소충전소	광주 서구 매월동 367-4

※ 전국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및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붙임 2]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사 현황(여수)

구 분	대리점명	주 소	전화번호
현대자동차	여천지점	여수시 선소로 118(신기동)	061-685-4111
	문수대리점	여수시 문수로 14(문수동)	061-654-3111
	구봉대리점	여수시 어항로 7-1(봉산동)	061-642-7800
	무선대리점	여수시 성산로 12(화장동)	061-686-1400
	미평대리점	여수시 좌수영로 407(미평동)	061-654-3500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수소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기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여수시가 해당 차량 제조사로 지급합니다.
- 2026년 여수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 ‘5. 유의사항 및 6. 의무준수 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이행에 동의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여수시 기후생태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

신청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제작·수입사)

(인)

**여수시장 귀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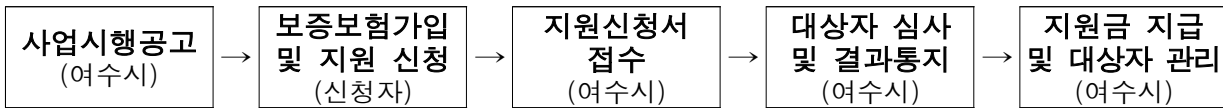
여수시에서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여 수 시 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를 지원(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사업절차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1)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2)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3) (자동신청)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 시 사업 자동 신청

○ 사업신청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5)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6)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3. 심사 및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결정통지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적합',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인 경우 '부적합' )

**4. 지원금지급**

- 심사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

**5.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

**6.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61-659-4029)에 문의바랍니다.





**서식2****위임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성명

(서명)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지침

---

2025. 10.

국토교통부

본 사업지침 외 사업 수행단계별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사업개요 .....	1
II. 업무처리절차 .....	3
1. 신청접수 .....	3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	4
3.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	6
4. 이의신청 .....	6
5. 지원금 환수 .....	6
III. 기관별 주요 역할 .....	7
IV. 기타 고려사항 .....	8
[참고] 연소득 산정 기준표 등 .....	9
[서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등 .....	17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요약

<b>사업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li> <li>-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li> </ul>								
<b>지원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li> </ul>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li> <li>*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임차인</td> <td>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td> </tr> <tr> <td>청년* 외 임차인</td> <td>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td> </tr> <tr> <td>신혼부부** 임차인</td> <td>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li> <li>**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li> </ul>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b>소요재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235.6억원(국비 117.8억원, 지방비 117.8억원) ※ '25년 기준</li> </ul>								
<b>신청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li> </ul>								
<b>신청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li> <li>○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li> </ul>								
<b>지자체 사전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li> <li>○ 예산편성(지방비 매칭)</li> </ul>								
<b>홍보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신청, 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안심전세앱,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오프라인(KTX역, 지하철역 등)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li> </ul>								

# I. 사업개요

## 1 추진 개요

### □ 추진 배경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 '23년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
-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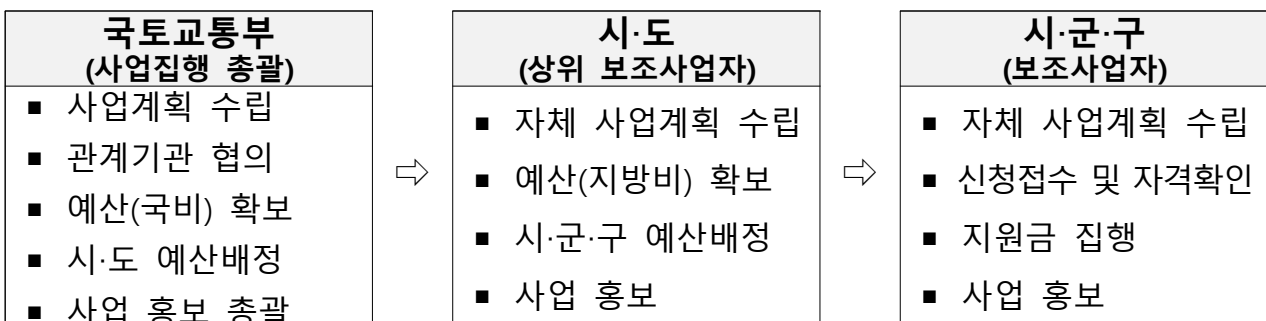
### □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23.12.21.), '24년 국비보조 117.8억원 의결 ('23년 대비 57억원 증액) 및 정책 대상 확대 결정

### □ 추진 체계



##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을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신청 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예산 소진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마감하며, 보증료 지원사업 자동신청자는 보증신청일자를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일자로 본다.

## II. 업무처리절차

### 1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신청)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 대구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대구광역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방문
  - ※ 지자체별 여건(신청자의 이동거리,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읍면동에서 접수
- (자동신청)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
-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안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을 진행하며,
  -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추가 제출
- ※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안내

##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 □ 심사 기간

- 보조사업자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 방문 신청에 따른 접수일자 또는 보증기관 대상자 목록 송부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심사 방법

#### ① 지원 대상

- (보증 효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주택소유)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 홈즈 조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음
- (연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과 청년 외 구분
  - \* 시·도 조례에 따르면 전남, 강원도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연소득) 소득종류 및 근무연수에 따라 연소득 판단<sup>별첨1</sup> 참고
- (특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목록\*을 송부받은 경우, 참고2에 따라서 처리
  - \* HUG 저소득 및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안심전세포털 신청자 등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확인해 보증 시작일이 '25.3.31일 이후라면 최대 40만원 지원('25.3.30일 이전이면 최대 30만원)

## ②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방법>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 또는 렌트홈 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심사결과 통지

-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결정
- 보조사업자는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3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 □ 지원금 지급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결정(적합)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 지원사업 처리현황 관리

- 상위보조사업자는 신청건수,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월간 지원사업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부에 보고

### □ 지원대상자 관리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지원대상자 현황을 서식10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고
  - \* 추후 보증 해지 여부 확인 및 환수를 위해 이름, 보증서번호 등은 오타가 없도록 관리 필요
-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부에 보고

## 4 이의신청

### □ 개요

-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 업무절차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게 통보

## 5 지원금 환수

### □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증료 지원금 수령 이후, 보증 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 \* 기존 보증료에 대한 지원금과 환불 후 최종 보증료에 대한 지원금의 차액만큼 수혜자에게 환수
  - ※(예시) 기존 보증료 48만원, 환불 6만원인 경우 최종 납부액 42만원으로 환불 이후에도 지원금은 40만원이므로 환수X
  - 기존 보증료 48만원, 환불 12만원인 경우 최종 납부액 36만원으로 환불 이후 지원금은 36만원이므로 4만원 환수

## □ 보증해지자 환수 방안

-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연 1회 보증기관에 전달

\* 이름, 보증서번호(증권번호), 보증금액 등 서식10번 '지원대상자 현황'을 작성

- 보증기관은 수혜자의 환불여부, 환불금액, 보증 종료 여부 등을 작성하여 회신

- 국토부는 보증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각 지자체로 송부하며, 각 지자체가 환수 진행

\* 보증료, 지원금액, 환불금액을 바탕으로 수혜자별 환수해야할 금액을 환수 대상자 명단과 같이 지자체에 교부 예정

## □ 업무절차

- (사전통지) 보조사업자는 환수 원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 예정임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지원금 환수원인, 환수금액, 의견제출 기간 및 절차 등

- (의견제출)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안전보고) 보조사업자는 5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증빙자료와 보조사업자의 의견 등을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 (최종판단)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 결정의 적합성 등을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보조사업자 및 국토부로 통보

- (환수통지) 판단결과 환수결정이 적합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반환금액, 반환방법 등 안내

- (징수처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제1항)

---

### Ⅲ. 기관별 주요 역할

---

#### □ 국토교통부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시·도 국비교부·관리, 사업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 지원
- 사업 홍보 총괄

#### □ 시·도 (상위 보조사업자)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자금배정, 정산관리 등 관할 보조사업자 총괄관리
- 지원자격 상실에 대한 최종판단
- 사업 홍보(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 □ 시·군·구 (보조사업자)

- 신청접수 및 신청자 자격 확인, 지원금 집행
-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 사업 홍보(시·군·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

### Ⅳ. 기타 고려사항

---

- (중복방지)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 동 사업과 기존 지자체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사업의 요건을 재구성하거나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
- (기준준용) 동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사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복지부) 기준 준용

# 참고1

# 연소득 산정 기준표

## 1. 소득종류별 연간소득 확인방법

소득종류		제출 및 확인서류	연간소득 인정기준
근로소득	1년 이상 재직자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1년 소득확인 시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최근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1) 1년 소득확인 시 증명원상 소득금액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ISA 가입용)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상 소득금액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1년 미만 재직자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복직자	급여명세표 등*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증명원상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영수증상 소득금액	

소득종류		제출 및 확인서류	연간소득 인정기준
연금 소득	1년 이상 수령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
	1년 미만 수령자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배우자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경우 포함)	(연금수령합계액÷해당월수)×12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통장분실 등 입금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

## 2. 연소득 산정방법(부부 합산소득 산정)

가. 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여러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다.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인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득은 연환산 한다. (사업소득은 연환산 불가, 前 직장의 소득은 불인정)

라.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하거나 연봉(근로)계약서 상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 소득발생기간이 9.15~9.30인 경우,

$$\text{소득인정금액} = \text{소득발생금액} / 16\text{일} \times 30 \times 12\text{개월}$$

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하며,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한다.

바.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하다.

사.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아. 휴직자가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한다.
- 자. 소득을 입증하였으나, 신청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차. 건강보험자격이 직장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를 포함)의 피부양자인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
- 카.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다.
  -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하다.
- 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에 없다는 객관적인 서류 징구 후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란에 "신청일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특약문구 작성)
- 하. 국세청([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사실증명발급신청)의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

### 3.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

-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
- 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한다.
  - \*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
- 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라. 기타
  - 1) 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확인 생략
  - 2) 건강보험가입내역으로 소득종류(직장, 사업소득)를 확인하여 소득증명 서류를 징구

## 참고2

## 보증기관 송부 대상자 목록 파일 처리 방법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서식 개정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0.31부터 시행 예정)

### □ [파일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처리 방법

- 기존 온·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보증기관 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엑셀)\*\*으로 적합 여부 판단

\*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서약서, ②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③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통장사본, ⑥혼인관계증명서, ⑦소득확인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엑셀) 자료 'AG열' 이 'N' 일 경우, HUG 보증 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자동 신청된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으로, 민간 임대주택 여부 확인 후 신청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보를 받아서 진행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목록(엑셀양식) >

	A	B	C	D	E	F	G	H	I	J	K	
1	신청일자	고객명	고객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보증접수번호	보증서번호	보증상태	취급형태	
2	2025-03-12	김○○	901111111	12345678	010-0000-(국민	123456789	2025000000	012220259	정상	직접보증		
3	2025-03-12	박○○	901111111	12345678	010-0000-(국민	123456789	2025000000	012220259	정상	직접보증		
4	2025-03-12	이○○	901111111	12345678	010-0000-(농협	123456789	2025000000	012920259	정상	위탁보증		
	L	M	N	O	P	Q	R	S	T			
1	고객번호	고객명	주민번호	전세보증금	보증잔액	보증시작일자	보증종료일자	우편번호	주소			
2	901111111	김○○	12345678	170,000,000	170,000,000	2025-03-11	2027-01-20	12345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3	901111111	박○○	12345678	300,000,000	300,000,000	2025-03-11	2027-01-15	5432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	901111111	이○○	12345678	233,000,000	233,000,000	2025-03-11	2027-04-09	1111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1	상세주소	동	호	주택형태	보증료	TEL	휴대전화번호	연소득5천만원이하	신혼부부	지자체	재원구분	무주택자
2	123 00마을	00동	00호	다세대주택	515740		010-0000-000			○○○		
3	00번지 00마을	00동	00호	오피스텔	861690		010-0000-000		○	○○○		○
4	321 00마을	00동	00호	아파트	282360		010-0000-000	○		○○○		○

#### ① 신청서 및 서약서

-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서약서 동의를 받음  
⇒ 메일로 전달받은 신청자 목록(엑셀)으로 같음

#### ②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 I열(보증서번호), O(전세보증금), Q~R(보증기간), Y열(보증료)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만 확인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요청)

④ 주민등록등본

⇒ D열(주민번호)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 F~G열(환급은행 및 계좌)

⑥ 주택소유 여부 확인

⇒ AF열(무주택자)에 O표시가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 AF열(무주택자)이 빈칸이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청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⑦ 전년도 연소득 확인서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AB열 O표시 된 경우)

⇒ AB열에 O표시가 있다면 소득조건은 만족한 것으로 판단

- 연소득 5천만원 초과(AB열 빈칸인 경우)

⇒ U열(신혼부부)에 O표시가 있는 경우는 소득조건 만족

⇒ U열(신혼부부)이 빈칸일 때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요청

○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신청된 저소득, 신혼부부(AG열 '보증료지원신청 (안심전세포털)'이 'N'으로 표시된 경우)

- HUG 보증 할인자의 경우 HUG에서 소득, 주택 소유 여부, 신혼 여부 등은 검증하였다고 보며, 지원대상 제외 여부(민간임대 거주 등)만 확인 필요

- 다만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정보 요청

○ 기타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목록을 공문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A열(신청일자) 기준 Q~R열(보증기간)이 유효한지 확인(자동 신청자의 경우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봄)
  - 등록임대주택 여부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렌트홈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안심전세포털 신청자 및 보증 확인자' 명단 누적 관리
- ☞ ①~⑦ 및 주택소유·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후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 결정통지 문자 예시 >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00시 00과입니다.

1. HUG안심전세포털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장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00.00
  - 지원금액 : 000,000원
  - 지급계좌 00은행 000-0000-0000
  - 지급(예정)일 : 2025.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증 중도 해지 및 취소로 보증료를 환불받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00-0000-0000(☆☆과 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00시 00과입니다.

1. HUG안심전세포털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심사 결과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외사유 :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사유) / 제외대상자에 포함(사유) / 기타(사유)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00-0000-0000(☆☆과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 요건	주택소유여부 <sup>1)</sup>	(○, ×)	신혼부부 여부 <sup>2)</su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sup>3)</sup>	(○, ×)	보증기관 <sup>3)</sup>	
	보증가입일자 <sup>3)</sup>	. . . .	납입보증료 <sup>4)</sup>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 <sup>5)</sup>	원

지급계좌 <sup>6)</sup>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 작성방법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위임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결정통지서**

[1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적합

1. 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홍길동	0000.00.00.	000,000원	○○은행 000-00000-000000000	2024.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도 해지 및 취소로 보증료를 환불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대상제외사유	<input type="checkbox"/>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 )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자에 포함(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안내	1.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보조사업자(시·군·구)의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문의 전화번호

성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4****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처분내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5****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6****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8**

**환수통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서식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연번	지원사업 신청일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물건지 주소	담당 광역 지자체	담당 기초 지자체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1	24.3.5.	홍길동	95.01.01.	남		경기도	남양주시	HUG	19502025-912-3794300
								HF	

임차보증금 (백만원)	연소득 (백만원)	제외대상 여부	지원결정	지원 부적합 사유	지원유형	지원 통지일	보증료 (원)	지원금액 (원)	환불여부	환불금액	보증 종료 여부	환수금액 (원)
200	40				청년외	25.09.30	420,000	378,000	○	50,000	○	45,000
					청년	25.04.11	500,000	400,000	○	110,000	○	10,000
									*보증기관 입력	*보증기관 입력	*보증기관 입력	*자동계산

\* 업무 절차상 필요시 제출 양식이나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2026년 ~ 2028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거문리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10,369㎡ - 규모: L= 480m B= 9.75~10.75m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공람장소	공람기간
거문도항 제2삼호교 건설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여수시 도시계획과	2026. 2. 2. ~2026. 2. 19.(17일)

### 3. 주민 등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2. 2. ~ 2026. 2. 19.(17일) ※초일 미산입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4. 편입토지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덕촌리	390-4	대	197	4	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				
2	덕촌리	390	전	220	3	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				
3	덕촌리	389-1	임	2	2	공	여수시				
4	덕촌리	390-2	전	62	47	국	국토교통부				
5	덕촌리	390-3	전	16	16	공	여수시				
6	덕촌리	산190-44	임	888	23	국	국토교통부				
7	덕촌리	산190-45	임	974	33	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8	덕촌리	388-1	전	84	26	국	국토교통부				
9	덕촌리	산190-46	임	683	417	국	국토교통부				
10	덕촌리	389	임	87	87	최**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11	덕촌리	산190-17	임	5,867	1,479	주****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				
12	덕촌리	-	해		7,427	국					
13	거문리	145	도	1,273	50	국	국토교통부				
14	거문리	111-26	대	26	8	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15	거문리	111-16	대	92	82	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				
16	거문리	111-15	대	25	3	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17	거문리	111-14	대	55	8	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18	거문리	111-17	대	159	156	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 ***동 ***호(당진롯데캐슬 아파트)				
19	거문리	111-7	대	159	24	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20	거문리	111-5	대	126	19	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				
21	거문리	111-18	대	122	122	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				
						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호교길 **				
22	거문리	111-4	전	182	34	국	국토교통부				





[여수시 공고 제2026-391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동북아 LNG Hub 터미널 1-1단계 송출주배관 건설공사

나. 발 주 자 :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주)

다. 시 공 자 : (주)BS한양

라.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번지, 월내동 1089번지, 적량동 1332번지 일대

2) 용도/구조 : 구조 등(주배관 공사 설치 5.5km, 관리소 3개소, 특수구간 5개소)

3) 공사기간 : 2025. 4. 11. ~ 2027. 12. 31.

4) 공 사 비 : 47,520,000,000원

5) 안전점검 비용 : 22,854,920원 (부가세 포함)

###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 가. 점검종류

안전점검 대상	점검명(구조물명)	정기안전점검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흙막이 말뚝	2회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세미셴드 수직구	2회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조립식판넬	3개 항목 각 2회 (총 6회)
	압입구	
	세미셴드구간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묘도관리소	2회
항타기 사용공사	묘도 관리소 기초	2회

####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42호

####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2. 3.(화) 10:00 ~ 2. 6.(금)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 신산업에너지과 수소산업팀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6. 2. 9.(월)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2. 10.(화) 17: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2. 11.(수)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신산업에너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범위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3891, 정재희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b>총 계</b>	<b>100</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5%;">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35%;">5천만원 미만</th> </tr> <tr> <td>배점률</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3. 배점기준

구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비고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배점 = 총계 X 배점률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서식3]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b>※부가세포함</b>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 여 수 시 장

###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수리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발전소 위치	용량(kW) (개시용량)	비고
1	양도인	김준영	여수 2024-156	에이치와이솔라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367-1	99.4 (99.4)	
	양수인	김혜영					
2	양도인	김혜영	여수 2024-193	정망고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379-1, 379-5, 379-6	99.4 (99.385)	
	양수인	정지연					
3	양도인	이정선	여수 2024-153	J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419, 420, 421	99.4 (99.4)	
	양수인	신창수					

끝.

## 계속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계속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9.

## 소 라 면 장

1. 제 목 : 계속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대 상 자 (1명)

성 명	주 소	반송 사유	비 고
이승*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이미가삼밭길 ***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5. 1. 29. ~ 2026. 2. 12.(15일간)

### 5. 공고내용

- 계속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소라면사무소 개발팀(☎ 061-659-1074)

여수시 고시 제2026-4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30.

여 수 시 장 (인)

### 1. 도로명주소(부여·변경)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묘도동 1023-3	전라남도 여주시 묘도2길 7-1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정면 적금리 147	전라남도 여주시 적금대교로 113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서촌리 1126	전라남도 여주시 화서로 713-12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나진리 857-5	전라남도 여주시 참새미길 86-17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손죽리 산1258	전라남도 여주시 우데미길 51-37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나진리 852-4	전라남도 여주시 참새미길 86-32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치동 1376-1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신단1로 296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치동 1376-2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신단1로 276-41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치동 1376-3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신단1로 276-37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치동 1376-4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신단1로 276-35	2026012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대복길 61-2	전라남도 여주시 대복길 61	20260126	건물번호 맞변경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주시 대복길 61	전라남도 여주시 대복길 61-2	20260126	건물번호 맞변경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